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재난의 정의 추가〉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91호)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1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채현일의원안】

- 1. 제안경위 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병주의원안】

- 1. 제안경위 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 . 검토의견 3

- 1. 사회재난의 범위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추가(채현일의원안) 3
- 2. 사회재난의 범위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 추가(김병주의원안) 7

I. 개요

【채현일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29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
3. 회부연월일 : 2024. 8.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서울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김병주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7.
3. 회부연월일 : 2024. 8.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나목).

II. 검토의견

1. 사회재난의 범위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추가(채현일의원안)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u>다중운집인파사고</u>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나. ----- ----- ----- ----- <u>다중운집인파사고·정보통신망침해사고</u> ----- ----- ----- ----- ----- -----

현행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 ----- ----- -----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감염병,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¹⁾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유형 중 하나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규정²⁾하고 있음.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별표 1의3]
-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그런데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망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포함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위기관리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침해사고’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³⁾에 따라 “안보” 분야로 분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주관기관으로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분야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 중복 입법으로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인해 국가위기관리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위기관리체계 분야별 관계 법령]

구 분	관계 법령
안보 분야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테러방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시법령 등
재난 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 「감염병예방법」 등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망침해사고’는 현행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따라 “안보” 분야의 위기(사이버위기)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사회재난의 범위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 추가(김병주의원안)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북한의 도발(평시에 한함)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u>다중집인파사고</u>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	나. ----- ----- ----- -----다 <u>중집인파사고·북한의 도발(평상에 한정한다) 등으로</u> ----- ----- ----- ----- ----- ----- ----- -----

현행	개정안
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 -----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하여 차량, 건물 및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되는 등 국민의 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생명·신체의 피해에 대해서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시가 아닌 평시에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안보”와 “재난”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관한 사항은 “안보” 분야에 해당한다는 점, 지난 2024년 9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확정되면 개정안의 취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